

# 태권도심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4조에 의한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이하 "심사") 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2., 2019. 12. 19., 2021. 9. 29.>

**제2조(적용범위)** 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4. 12.>

## 제2장 심 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심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19. 12. 19., 2021. 9. 29., 2022. 4. 12., 2024. 6. 20.>

1. "심사"란 태권도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 정도를 측정, 평가받는 과정을 말한다.
2. "급"이란 태권도 수련자에게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품"이란 만 15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다만, 4품은 18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4. "단"이란 만 1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다만, 4단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5. "명예단"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6. "추서단"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유단자가 타계하였을 경우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7. "품·단증"이란 품·단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응시자"란 심사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9. "국가협회"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가맹된 각국의 태권도단체를 말한다.
10. "태권도 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국기원의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태권도사범 또는 장애인사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1. "태권도 단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태권도장(클럽)과 태권도 사범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2. "기관"이란 군경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3. "추천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과 국기원의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태권도사범 또는 장애인사범 자격을 획득한 태권도 사범으로서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응시자에 대한 추천 또는 심사시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4. "심사위원"이란 심사의 감독, 평가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15. "심사추천"이란 국기원 심사에 응시하려는 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심사위임"이란 국기원 심사 권한을 위임 계약에 따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심사 업무와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17. "심사시행"이란 국기원 심사에 대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실기, 이론 등 심사를 실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심사수임단체"란 국기원 심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위임 받은 국가협회, 태권도 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을 말한다.
19. "심사재수임단체"란 심사수임단체로부터 국기원 심사의 권한 중 심사시행에 대한 권한 등을 재위임 받은 태권도 단체를 말한다.
20. "유품자"란 국기원 4품 이하 품 보유자를 말한다.
21. "유단자"란 국기원 5단 이하 단 보유자를 말한다.
22. "고단자"란 국기원 6단 이상 단 보유자를 말한다.
23. "비대면심사"란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영상 및 원격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의 심사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란 국가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4조(품. 단의 위계)** 태권도 품.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삭제 <개정 2016. 4. 12., 2016. 6. 8., 2022. 4. 12.>
  1. 품의 위계 : 1품부터 4품까지
  2. 단의 위계 : 1단부터 9단까지. 단, 명예단은 1단부터 9단까지, 추서단은 5단부터 10단까지
- ② 삭제 <2016. 4. 12.>
- ③ 삭제 <2016. 4. 12.>
- ④ 삭제 <2016. 4. 12.>

**제5조(심사의 구분)**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19. 12. 19., 2022. 4. 12., 2023. 3. 16., 2024. 6. 20.>

1. 심사 주체에 따른 구분
  - 가. 승급 심사 :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수련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장에서 시행하는 심사
  - 나. 승품·단 심사 : 국기원이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승품 심사와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승단 심사
2. 삭제
3. 삭제
4. 심사 기준에 따른 구분
  - 가. 일반 심사 : 표준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
  - 나. 특별 심사 :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

5. 삭제

6. 삭제

7. 응시자의 장애에 따른 구분

가 비장애인 심사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심사(장애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등도 포함 가능)

나. 장애인 심사 : 별도로 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2024. 6. 20.>

③ 삭제 <2016. 4. 12.>

**제6조(심사위원)** ① 국기원은 심사에 필요한 감독관, 심사평가위원 등의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29., 2023. 3. 16.>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기원은 심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 심사공정위원회,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12.>

② 필요에 따라 별도로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심사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③ 제1항,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12.]

**제8조(심사수수료)** ① 국기원은 응시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② 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1. 발급수수료 : 품·단의 등록, 품·단증의 발급 및 교부에 수반되는 비용

2. 위임수수료 :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재위임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3. 시행수수료 :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변동률 및 원가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 산정하며, 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24. 6. 20.>

④ 심사수수료는 품·단 및 국가별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⑤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심사수수료에 합산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4. 12., 2022. 4. 12.>

⑥ 심사수수료 환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4. 12.> <개정 2024. 6. 20.>

### 제3장 심사시행

**제9조(심사의 공고)** ① 국기원은 심사시행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10조(응시자격)** ① 국기원은 승품·단·연한, 연령, 태권도 경력 및 보수교육, 장애여부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 12. 19., 2024. 6. 20.>

- ② 응시결격사유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 ③ 태권도 및 국기원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12.]

**제11조(표준심사과목)** ① 표준심사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1. 실기 :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선택적 시행 가능)
  2. 이론 : 필답, 논술
  3. 구술면접
- ② 제1항의 표준심사과목 외에 심사과목을 신설, 추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12조(심사평가)** ① 심사평가는 국기원의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개개의 응시자를 평가하는 방법인 절대평가로 한다. <개정 2022. 4. 12.>

- ② 심사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 ③ 심사의 합격은 각 과목별 합격여부를 종합 판정하며 심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4. 12., 2024. 6. 2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이 위임한 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사시행단체에서 국기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기원이 이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0.>
- ⑤ 제2항,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13조(심사결과 공고)** ① 국기원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2.>

- ② 심사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본조신설 2016. 4. 12.] [개정 2022. 4. 12.]

**제14조(심사결과자료의 요구)** ① 국기원은 응시자 또는 추천사범이 심사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결과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6. 20.>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15조(심사시행의 점검사항 등)** ① 심사시행 단체는 심사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시행 현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심사장 제반시설 및 구비 물품 등
2. 심사위원, 진행위원, 의료진 등의 구성, 배치
3. 응시자, 심사위원, 진행위원 등의 복장
4. 안전 및 질서유지 대책 등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 제4장 심사위임 및 추천

**제16조(심사위임)** ① 국기원은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국기원은 심사의 권한을 심사수임단체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③ 제2항의 위임계약에 따라 심사수임단체는 계약을 통하여 수임된 권한을 심사재수임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④ 제2항의 계약서는 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4. 12., 2024. 6. 20.>

⑤ 심사위임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즉시 발생한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본조신설 2016. 4. 12.]

**제17조(책무)** ① 국기원은 심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② 국기원 또는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22. 4. 12.>

③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④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위임계약에 의거 부여받은 심사권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단체의 실정에 맞게 심사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국기원 심사 관련 규정·규칙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제·개정할 때마다 국기원에 보고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21. 9. 29., 2022. 4. 12.>

⑤ 심사수임단체 및 심사재수임단체가 심사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기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2., 2021. 9. 29., 2024. 6. 20.>

⑥ 심사재수임단체가 심사 관련 규정·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국기원 심사 관련 규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개정을 할 때마다 심사수임단체를 거쳐 국기원에 보고한다. <신설 2016. 4. 12.> <개정 2021. 9. 29., 2022. 4. 12., 2024. 6. 20.>

⑦ 제2항,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2024. 6. 20.>

**제18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가 제17조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수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임을 정지, 취소한다. 단, 심사재수임단체의 경우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위임의 정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2022. 4. 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제1항의 사항은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③ 심사위임이 정지,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의 심사는 심사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개정 2015. 3. 2., 2016. 4. 12.>

④ 심사재위임이 정지, 취소된 심사재수임단체의 경우 심사수임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단, 심사수임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개정 2018. 9. 7., 2022. 4. 12.>

⑤ 제1항~제4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9. 7.>

**제19조(심사추천)** ①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 또는 태권도사범에게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②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을 심사재수임단체 또는 등록된 태권도 사범에게 재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2022. 4. 12.>

③ 제2항의 태권도 사범과 해외추천사범은 태권도의 특수성인 사제(師弟) 간의 예의와 질서 등을 계승,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추천하여야 한다.

④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 또는 제2항의 태권도 사범이 심사를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취소를 한다. <개정 2022. 4. 12.>

⑤ 국기원이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취소를 위임한 경우, 심사수임단체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취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4. 12.>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12.]

## 제5장 품·단증 교부 등

- 제20조(품·단증의 교부 등)** ① 국기원은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 규정 및 태권도 심사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국기원장 명의로 품·단증을 발급, 교부한다. <개정 2016. 4. 12.>
- ② 명예단증 및 추서단증을 발급,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 ③ 유품자가 만 15세 이상(4품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 단으로 자격을 전환, 단증을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단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품·단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 ⑤ 품·단증을 발급, 교부할 때에는 유품·단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유품·단자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 최초로 부여한 품·단 번호를 유지하되, 장애인 심사의 경우 품·단 번호에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2024. 6. 20.>
- ⑥ 품·단증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24. 6. 20.>
-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2024. 6. 20.>
- [제목개정 2024. 6. 20.]

- 제21조(심사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국기원은 심사 질서 문란행위를 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때에는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4. 12.>
- ② 국기원이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와 관련한 징계를 위임한 경우에는 심사수임단체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 <개정 2022. 4. 12.>
- ③ 제1항,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4. 12.]

- 제22조(제출서류 등)** 심사 및 품·단증의 발급, 교부 등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0.>
- [본조신설 2016. 4. 12.]

## 제6장 보 칙

- 제23조(규정적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시행되는 심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 4. 12.]

- 제2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0.]

**부 칙** <제정 201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의 심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